2019년 하반기 외부강의 등

조 사 결 과 보 고

감 사 실



Ⅰ. 지적사항 일람표

번호	처분 종류	소관부서	제 목	처리기 한	처분대상자	감사자
1	주의 • 통보	○○본부	외부강의 등 미신고	2개월	O장 OOO	000

Ⅱ. **처분요구서** (1건)

(1) 주 의 요 구 · 통 보

제 목 외부강의 등 미신고

소 관 ○○본부

조 치 부 서 ○○본부(○○○○처), ○○본부(○○○○처)

내 용

1. 관계법령(판단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대가및 요청공문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 등 개시 전까지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미리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본부 ○○○○○단 ○○○○○장 ○○○은 [표]와 같이 ○○○○ ○○○○협회의 요청에 따라 2019. 11. 21.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해야 하나, 강의 대가가 없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하여 2020. 1. 29. 점검일 현재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실에서 조사 후 20××. 1. 30.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

소속	직책	성명	요청기관	강의일시	시간 (금액)	관련자료
○○본부	○장	000	○○○○○ ○○협회	201×. 11. 21 15:30~16:00	30분 (0원)	○○○○○단-17331('1×.11.22) ××××××세마나 발표

따라서 ○○본부 ○○○○○단 ○○○○○○장 ○○○의 행위는 「한국철도시설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의2에 해당한 다.

〈조치할 사항〉

[주의] OO본부장은「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OO본부 OOOOO단 OOOOO장 OOO(×× ×급)에 대하여「인사규정시행세칙」제92조의2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OO본부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OO본부 OOOOO단 OOOOO장 OOO(×× ×급)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